

■ 화제의 뉴스 ■

주택사업계획 변경 사항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월 2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바뀐 내용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우편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 면적이나 분양가 등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닌, 주택 마감재료 종류나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어, 주민들은 입주하고 나서야 분양받을 때 들었던 사업계획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정도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주택사업계획 변경 사항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2015. 6. 25.\)](#)